

제329회 임시회  
2014. 4. 14.(월)

# 심 사 보 고 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월)

건설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2014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2014년 3월 14일

라. 상정일자: 2014년 4월 8일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예산담당관 정사환)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조문 정비(안 제14조)

○ 영 제79조제1항 → 영 제79조

##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전문위원: 문홍열)

###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11.3.2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공기업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82조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도 조례 제14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간 상충되는 내용없이 간결하게 표현하였음.

#### 라. 검토의견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
- 다만,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 사항과
- 현행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 조항 또한 상위법령에서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조문과 조례 내용의 통일성이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 주요 삭제내용: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 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는 일반기준과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함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4. 8. 김영주 의원

○ 수정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과  
통일성을 기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함.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 별표와 같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① <u>법 제82조</u>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u>영 제79조제1항</u> 별표와 같다.</p> <p>② 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① <u>법 제82조</u>----- ----- ----- <u>영 제79조</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u>법 제82조제1항</u>----- ----- ----- <u>영 제79조</u> - -----.</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 별표와 같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① <u>법 제82조</u>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u>영 제79조제1항</u> 별표와 같다.</p> <p>② (생략)</p>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u>법 제82조제1항</u>-----  <u>영 제79조</u> -----.</p>

##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라도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74조(법 제76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법 제82조제1항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3) 감사원의 감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 4)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감사기일에 수검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법 제74조(법 제76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3) 감사원의 감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 4)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감사기일에 수검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법 제74조(법 제76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 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3) 감사원의 감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 4)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감사기일에 수검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만원	80만원	160만원
		30만원	60만원	12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만원	80만원	160만원
		30만원	60만원	12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